

【본문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현행과 같음)
1. 2. (생략)	(현행과 같음)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현행과 같음)
가. 택배서비스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	(현행과 같음)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	<p>나. ----- -----이륜자동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이하 “드론”이라 한다)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이하 “실외이동로봇”이라 한다)을----- -----</p>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화물의 집화·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u>

② ~ ④ (생략)

제 19조(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7조제 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생략)

<신설>

「항공사업법」 제 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 40조의 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 19조(인증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 19조의 2제 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 19조의 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제 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 제 5조의 4, 제 5조의 5, 제 5조의 9 및 제 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신 설>

다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운전자격(「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 35조(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제 35조(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①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서비스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 제1호부터 제5호-----

③ 서비스평가는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 ⑦ (생략)

제38조(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생략)

<신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략)

<신설>

<신설>

10. ~ 14. (생략)

② (생략)

③ -----소비자와 생활물류 서비스종사자-----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9의3.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10.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개정사항】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4, 제35조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의 집화·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 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유효한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운전자격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종사자가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한다.